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51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 홍성룡, 노식래, 추승우, 김화숙,
송재혁, 박기열, 박순규, 김상훈,
이광호, 이은주, 이영실의원(11명)

1. 제안이유

최근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음주운전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다. 음주운전 예방 및 음주운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교통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행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자치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시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구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호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자치구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

전거를 대여할 경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수행

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공이 큰 단체

나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전제

- 5년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라. 방법

-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원 비용은 2020년 도시교통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홍보, 캠페인 11개 사업들의 평균비용 181,755천원을 적용(2020년 예산서 기준)

사업명	사업비(천원)
걷기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50,000
보행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300,000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670,000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150,000
팝업스토어 운영 기획 및 홍보	90,000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홍보	70,000
자전거 안전 교육	155,000
자전거 안전 홍보물 제작 등	182,300
보행친화도시 조성 홍보	100,000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홍보(메체, 홍보물 등)	220,000
교통특별대책 추진관련 홍보	12,000
평균	181,755

자료: 서울시 2020년 예산서

주: 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150,000천원),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22,500천원),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1,005,170천원), 단속원 교육비(4,000천원) 제외

마. 세부추계내역

-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원 비용≒908,77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도별 음주운전예방활동지원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도별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원 비용≒181,755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